

이천시 청문 운영 규정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23. 5. 17 훈령 제3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천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천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제부서”란 청문 절차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청문장”이란 청문주재자가 청문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4. “중요청문”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가 주재하는 청문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청문대상)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2.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3.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청문주재자가 청문요청 사건에 제척·기피·회피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2.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시행규칙, 처분기준 등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요청사건이 제7조에서 정한 중요청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중요청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문일시의 지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의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문대상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문주재자의 선정)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박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법제부서 소속 공무원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7조(중요청문의 지정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중요청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에 대한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요청문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신체·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법제부서의 청문시행 통보)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중요청문 등을 지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대상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청문기일의 조정)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변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청문장) 청문과 관련된 처분부서 소속 공무원이 상주하는 사무실에서는 청문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청사 내에 전용 청문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인 회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청문의 실시)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청문대상자,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에 출석하고,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된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해야 하며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증거조사) ① 청문주재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참고인 등에게 고지하고 그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문대상자 등에게 고지하고 청문실시 상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① 처분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받아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

이천시 청문 운영 규정

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결과 반영통지서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문 조 서

| | | | | |
|----------------------------------|--------|----|----------|----------------|
| 제목 | | | | |
| 청문주재자 | 소 속 | | | |
| | 성 명 | | | |
|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 성명(명칭) | 주소 | 출석 여부 |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
| | | | | |
| | | | | |
|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 직위 | | | |
| | 성명 | | | |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 | | |
| 청문공개 | 공개 여부 | | | |
| | 이유 | | | |
|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 요지 | | | |
| | 제출된 증거 | | | |
| 증거조사 | 요지 | | | |
| | 증거 | | | |
| 기타 | | | | |
| 년 월 일 | | | | |
| 청문주재자 성명 : | | | | (서명 또는 인) |
| 열람·확인자 성명 : | | | | (서명 또는 인)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 |

[별지 제2호 서식]

청문주재자 의견서

| | |
|---|--|
| 청문의 제목 | |
| 처분의 내용 · 주요사실 또는 증거 | |
| 종합의견 (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 |
| 기 타 | |
|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p> | |

[별지 제3호서식]

청문결과 반영통지서

| | | | |
|------------|-----------|-----------------|--|
| 1. 당사자 | 성명(명칭) | | |
| | 주소 | | |
| 2. 청문실시 결과 | 일시 | 년 월 일 시 | |
| | 출석여부 | 출석() / 불출석 () | |
| 3. 청문결과 반영 | 예정처분 | | |
| | 실제처분 | | |
| | 청문결과 반영여부 | 반영() / 미반영 () | |
| | | 미반영 사유 | |
| | 처분일자 | 년 월 일 | |
| 그 밖의 사항 | | | |
| 4. 처분담당자 | 부서명 | 담당자(직·성명) | |

「이천시 청문 운영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감사법무담당관 귀하